

강원 맞춤형 ‘생활인구’ 정책 필요

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 올 시범 시행... 인구 감소 근본 대책도 추진을

정부가 ‘생활인구’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판단됩니다. 정책은 교통과 통신 발달에 따라 늘어난 유동 인구의 일부를 지역 인구에 포함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도와 도내 지자체는 이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강원도를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고, 이를 위해 맞춤형 방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일이나 공부 등을 위해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을 찾아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을 한 정주 인구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경기에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현지 인구로 보는 개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전국 89개 인구 감소지역 중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교부세 배분이나 국가보조금 사업 지원 등에 생활 인구를 반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이 12곳에 이르고, 관광객 수가 많은 강원도는 생활인구 도입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습니다. 휴양지에서 원격 근무하는 워케이션 근무자나 일주일 중 닷새는 도시에서 살고 주말 이들은 농촌에서 지내는 5도 2촌 생활자 등이 해당합니다.

도와 지자체는 유동 인구를 포함한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성별·연령대·체류 기간·체류 목적 등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인구 도입이 지역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강원도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공동화 위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수도권의 상주인구를 늘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해야 합니다. 산업 분산과 교통망 확충, 교육·의료 기반 강화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출처:강원도민일보 오피니언

정책제언 II

‘고독사 위험군’ 153만 명... 개인의 문제 아닌 사회적 질병

동아일보 오피니언

우리나라의 고독사 위험군이 15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인 가구가 717만 명이므로 5명 중 1명이 위험군인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인 가구 94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 식사 횟수 등을 토대로 추정했다.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돼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된다. 2021년 3378명이 고독사했다. 2017년보다 40% 늘었다. 1인 가구 중에서 연고가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지면 고독사의 위험은 높아진다.

고독사 위험군은 고령층이 다수일 것 같지만 실직, 이혼 등으로 경제력이 취약해진 40~60대 중장년층이 훨씬 많다. 이들 중에는 쪽방 고시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변변치 않은 수입으로 살면서 자포자기에 빠져 스스로 고립을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고독사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 질병으로 봐야 한다. 영국과 일본이 정부 내 고독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를 만든 건 이 때문이다. 최근 미국에선 고독이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일할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이 고립에 빠지면 사회적 생산성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 등으로 의료비용 지출도 늘어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추이를 볼 때 고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 역시 크게 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위험군이 더 커지기 전에 찾아내고 지원하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하지만 정책의 사각지대는 늘 존재한다. 정부가 소득, 보험료 체납 등 몇 가지 기준으로 고독사 징후를 찾아내려 하지만 한 가지 기준만 어긋나도 못 찾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웃이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마음의 문을 닫은 자발적 고립은 정책만으론 해결하기 어렵다. 가족 친구 이웃이 먼저 안부를 묻고 위로하는 등의 비공식적 지원이 마음을 열 수 있다. 고독사는 외로운 죽음이라 외로운 삶의 결과다. 홀로 죽음을 맞게 하지 말자는 차원을 넘어 살아 있을 때 이웃 사회의 관심과 돌봄이 절실한 이유다.

출처:동아일보 오피니언

국토교통부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 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월별로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플랫폼에도 표준화된 입력 기능을 마련하여 임차인이 해당 매물의 관리비 부과내역 등 정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해서는 부과내역 세분화 표시를 의무화
-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관리비 내역을 작성하도록 개선하여 매물 광고부터 계약까지의 전 과정에서 관리비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은 그간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더라도 청년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고, 임대인이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내 임대차 시장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확대

-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 참여 편의점 157개로 확대 -
- 당류를 적게 사용한 등의 진열대에 건강먹거리 코너 표지 부착 -
-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중 제품보다 당류를 적게 사용한 식품 등을 구분·표시해 판매하는 ‘건강 먹거리 시범사업’을 5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이번 사업은 어린이의 비만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단맛음료 섭취율**도 여전히 높아 어린이가 주로 식품을 구매하는 장소인 편의점에서 보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편의점 업계와 함께 확대·실시합니다.
 - * 6-18세 비만율: ('12) 10.2 → ('15) 10.3 → ('18) 11.6 → ('21) 16.2 (출처: 국민건강영양조사)
 - ** 중고생 63.6%가 주 3회 이상 단맛 음료를 섭취(출처: '22년 교육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중고생 68.5%가 편의점에서 하루 1회 이상 간식을 구매하고, 이 중 21%가 음료류를 구매(출처: '21년 농식품부 식품소비행태조사)
- '22년에는 학교 주변 편의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학원가, 도서관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 주변까지 포함해 수도권 157개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 * 시범사업 참여 편의점은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알림·교육 > 식품안전뉴스 > 정책소식’에서 확인 가능
-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 위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편의점에는 매장 입구 근처에 건강먹거리 코너 운영 매장임을 알리는 고유표지를 부착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음료 등 당을 적게 사용한 음료와 과일·샐러드 등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의 진열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먹거리 코너임을 알리는 표지물을 부착합니다.
 - * 진열·판매품목: ①과채주스, 발효유류 등 품질인증제품(식약처 인증) 및 기준 준용 제품, ②과일(당 절임 제외), 샐러드, 원우유 등 식생활 도움 식품
- 참고로 지난해 편의점 건강먹거리 코너 시범사업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을 지속·확대하길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약 90%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 * 현행유지 45.2%, 확대 23.8%, 대폭확대 21.4% 순(여가부, 청소년대표 42명)
-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더 강화한다

- 경찰청장, 정부 출범 1년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안전시설을 점검 -

- 현장에서 ▲ 학부모·학교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 ▲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 -
-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 정책에 반영할 계획 -

-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17일 서울 구로구 소재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요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찰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경찰청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 * 경찰청 주요 국정과제: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강화 등)
- 경찰청은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 올해 하반기에는 ‘노란색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를 도입하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노란색 횡단보도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색깔만으로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색칠하여 보호구역 인식률을 높인 시설물로, 지난해 전국 7개 시·도 12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개월간 시범 설치한 결과 보행자 및 운전자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도로교통공단, 2022. 10.)

- 보호구역 인지 기여도: 88.6%가 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
- 정지선 준수 기여도: 59.9%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고 응답
- 보행자 횡단시 보행자 안전 체감도: 성인 59.6%, 학생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

-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시인성 향상을 위해 보호구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로,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는 기점표시, 끝나는 지점에는 종점 표시를 각각 설치한다.
- ‘방호울타리(가드레일)’는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인 만큼 도로교통법 개정 등을 통해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최초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 덕의초등학교를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용품(가방 커버, 반사지 등)을 직접 도와주고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지도를 하였다.
- 이어서 학부모·학교·지자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지며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제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후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중학교를 방문해 3학년 학생 30여 명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하고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앞서 정부는 4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일방·지속적인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보호한다는 것이 중점적인 내용이다.
- 이에 따라 경찰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지원 강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특별예방교육 강화 ▲ 학교폭력 조기감지를 위한 경(警)·학(學) 공동대응 체계 구축 ▲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근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 신도림중학교 김홍배 교장은 “오늘 경찰청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앞으로 학교와 경찰이 더욱 자주 소통하고 정보를 교류하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피해학생을 지켜나가는 데 힘을 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 경찰청은 덕의초등학교 간담회와 신도림중학교 학폭 예방교육에서 나온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주요 정책에 반영키로 하였고,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치안 관련 국정과제 이행현황을 꾸준히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관련 법률안 입법동향

정 기 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1.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 지방의회의 의미 및 역할

-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1961년 해산된 이후 1991년에 부활하여 지방자치의 발전 및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의회는 입법기관의 역할로서 조례의 재정·개정 및 폐지 등을 결정하며, 정책결정기관의 역할로서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등(「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행정감시기관의 역할로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짐(동법 제 49조)
-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은 수도권으로 집중, 저출생·고령화, 다양한 주민 수요 대응 등 사회변화 대응에 한계점을 보이면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구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관련 변화 내용

-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됨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는 인사권 독립 규정(제103조제2항),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규정(제41조),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규정(제 53조, 제 76조) 등이 포함됨
- 지방의회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제43조제1항, 제5항), 지방의회 의원이 윤리심사 강화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제65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제66조),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록표결제도 도입(제74조), 사무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정보공개의 의무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 26조) 등이 포함됨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포함된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가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점이 존재함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으로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의 범위, 전문성 강화,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등이 지적되고 있음(문원식, 2020)

• [표 1]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점 •

구분	조문	한계점
조례제정의 범위	제 28조	• 조례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 지치입법권이 법률우위의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의 한계로 제약받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개정이 필요함 • 조례를 통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가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의 범위 확대가 필요함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제41조 제1항 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됨 •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정원을 한정한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강화라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의회 자율성 및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103항 제2항	•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 •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절차가 필요함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제43조 제65조 제66조 제74조	• 지방의회 의원 겸직 금지 명확화를 위한 겸직 대상 구체화,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윤리특별 위원회 설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청취, 기록표결제도 원칙도입을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책임성 및 투명성이 제고됨 •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지방자치 단체기관구성 다양화	제4조 제1항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다르게 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를 주민투표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해 별도의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

-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한 후 30여년이 지났으나 관(官)중심의 사고방식이 지방 내 지방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양영철, 2002),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이자 자치입법기관이지만 역할 수행을 위한 권한과 위상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함
-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문제해결과 지방행정의 기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의회는 과거 행정 감시기능 중심이 아닌 정책형성 기능을 강화한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권한을 가질 필요성이 있음(문원식, 2022)
- 지방분권 시대로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회법」의 적용되는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 관련 현행법 규정은 「지방자치법」 총 12개의 장, 전체 211조 중 제 5장 제37조 부터 104조에게까지 불과하며, 「지방자치법」 전체 체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태생적으로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에 한계가 존재함(성중탁, 2023)
-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관련 일부 규정이 수용되었으나 여전히 독립성 및 전문성 등의 부분에서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행 지방의회제도를 개선하는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위상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안의 입법이 추진됨

2. 지방의회법안 입법 동향

■ 지방의회법안 입법 추진 동향

- 전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별도로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포함한 ‘지방의회 기본법’을 구상함
- '18.2월 20대 국회 전현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을 입법발의 하였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심의되지 못한 채 폐기됨
- 전현희 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이 비록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위상 정립을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며,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도 지방의회법안이 꾸준히 입법발의 되고 있음
- '20.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서영교, 이원욱 의원 (이상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발의(서영교 의원 '21.8월, 이원욱 의원 '21.12월)하였음

• [표 2] 지방의회법안 입법 추진 경과 •

일자	내용
16.10.31.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구성(시의원, 실무의원, 외부전문가 등 총 13)
17.04.28.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 결의안' 통과(106명 전원 공동발의)
17.06.29.	•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정례회의, '지방의회법(안)' 제정계획 구상
17.11.17.	•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 통과(106명 전원 공동발의)
17.11.28.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서울시의회 의장 제출)
18.02.08.	• 제 20대 국회 전현희 의원 '지방의회법' 공동발의
20.11.17.	• 제21대 국회 이해식 의원 '지방의회법안' 재발의 [의안번호 2105421호]
21.08.18.	• 제21대 국회 서영교 의원 '지방의회법안' 재발의 [의안번호 2112100호]
21.12.29.	• 제21대 국회 이원욱 의원 '지방의회법안' 재발의 [의안번호 2115151호]

■ 이해식·서영교·이원욱 의원 지방의회법안 비교

- 2023년 4월 기준 지금까지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전현희 의원법안, 이해식 의원법안, 서영교 의원법안, 이원욱 의원법안이 있음
-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는 지방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및 위상 강화를 위한 내용 등이 포함됨
-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현희 의원법안을 제외한 이해식 의원, 서영교 의원,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안의 제안 이유, 조례제정 범위,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표 3] 지방의회법안 주요 내용 비교 •

구분	이해식 의원안(20.11.17)	서영교 의원안(21.08.18)	이원욱 의원안(21.12.29)
법안 구성	12장 89조 부칙 5조	12장 95조 부칙 5조	12장 98조 부칙 4조
제안 이유	•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지방의회 위상 확립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지방의회 위상 확립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 의원 이해충돌 방지 특례 규정	•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 • 지방의회 위상 확립 •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조례 제정 범위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함 •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함 •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함 • 주인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정책지원 전문인력	•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음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둘 수 있음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위원회에 전문위원 둘 수 있음 •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	• 지방의회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사항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함 • 소속 위원회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실 신고,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소속 위원회 위원장에게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의장인사권	• 사무기구 조직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 •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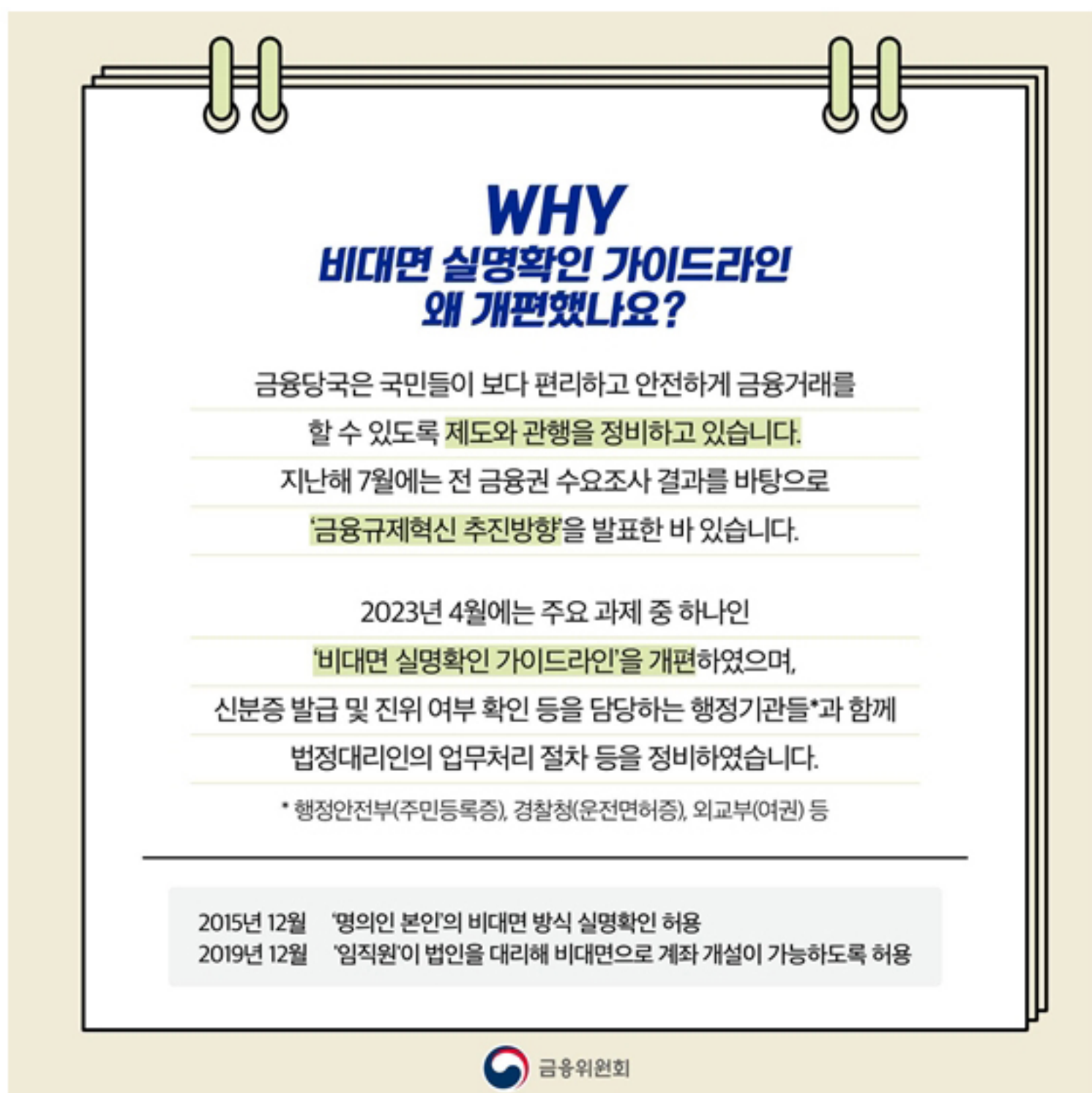
윤리강령	• 조례로 정함
의회경비	• 의회 경비 독립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함
의회 교섭단체 구성	• 조례로 정함

3.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제언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자치법」 내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독립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실익을 고려해야 함
-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의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기본적인 관계를 정한 「지방자치법」 과의 중복 또는 배치될 가능성이 있으며,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에 이미 포함된 일부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둘째,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어야 함
- 발의된 세 가지 지방의회법안을 살펴보면,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의 한계점인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로 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반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절차와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 규정이 부족함
- 셋째,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강화된 권한과 위상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성 및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토론회, 공청회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기관의 운영, 조직, 재무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출처 : 정기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알기쉬운 정책용어



알기쉬운 정책용어

WHAT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에 따라, 2023년 4월 10일부터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은행이나 증권사에 가지 않고, **비대면으로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부모의 신분증,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직접 확인합니다.



HOW 어떻게 개설하나요?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 개설 방법 (예시)



알기쉬운 정책용어

HOW

어떻게 개설하나요?

미리 준비해 두세요!

법정 대리인인 부모의 신분증 · 휴대전화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또는 자녀 명의 일반 증명서 또는
상세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자녀 명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금융위원회

WHEN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2023년 4월 10일(월)부터

개별 금융회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도입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일정	은행	증권사
시행중	-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2023년 상반기	-	토스증권
2023년 하반기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유안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나증권
2024년 상반기	경남은행, 케이뱅크	메리츠증권, 상상인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2024년 하반기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금융위원회